

「育兒施設 三-聖」

朴 勇 煥

漢陽大 建築科 교수

■ 施設 兒童

「장래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어깨에 별을 주렁주렁 단 장군이 될꺼야」 「장래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흥 웃기고 있네 우리가 커서 되긴 될 되겠어요. 아저씨 정말 웃기네.」

앞의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어른과 보통 아동과의 대화, 그러나 후자는 평범한 環境에서 자라난 우리에게는 무척 생소한 대화이다. 바로 育兒施設 이른바 고아원에 살고 있는 施設兒童들에게 어렵게 얻어낸 답변이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꿈이 없다. 마냥 꿈만 꾸며 어른이 된 후의 생활을 그려 보며 어른을 동경하는 어린이들만의 꿈과 소망이 없는 것이다. 단지 있다면 아주 소박한 것 사랑이다.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슬픔을 달래주고 기쁨을 같이 하는, 또 자신이 아프고 피로울 때 밤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옆에서 자기를 간호해 주는 사랑만이 이들이 원하는 전부인 것이다. 이것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면 더 이상은 대답을 않는다. 지금의 생활을 벗어난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은 없으며 또한 있다 하더라도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곧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N의 世界兒童權利宣言에 나타나 있는 兒童의 權利에 對하여 요약해 보면, ① 아동 권리의 무차별 평등향유의 원칙

② 아동의 지능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機會便益의 향유

③ 성명, 국적보유의 권리향유

④ 아동의 사회보장의 권리향유

⑤ 심신장애아의 사회적 필요 충족의 권리향유

⑥ 아동의 快適生活環境에서의 생활의 권리향유의 사회 및 공적 기관의 의무

⑦ 아동의 우선적 보호

⑧ 아동의 放任, 학대, 착취로 부터의 보호와 노동보호의 권리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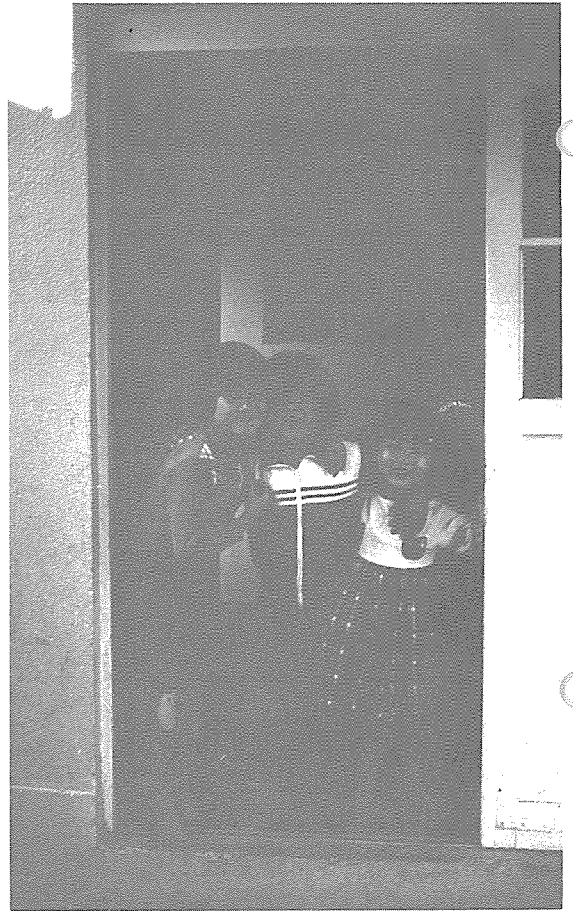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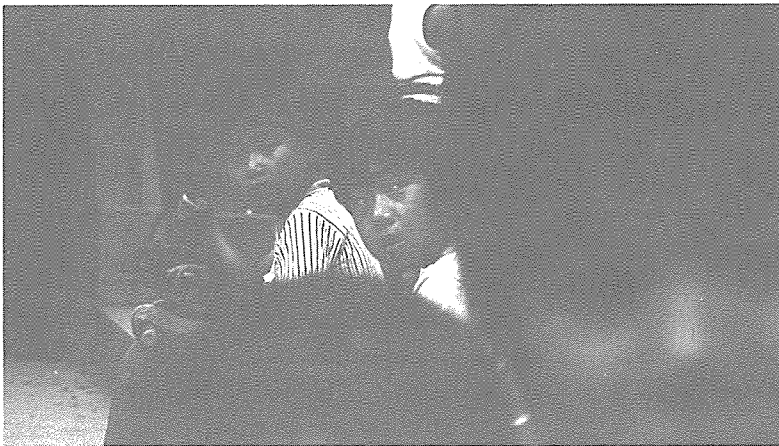
⑨ 아동의 평화적 분위기하에서의 생활의 권리향유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는 그것 자신이 개인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아동 자신이 權利主体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건강, 안전교육, 사회에의 참여라는 면에서 成人에 비해 다른 것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인간의 갓난 아이를 못동물중에서 가장 무능무력한 존재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무능무력에서 이른바 「영장」으로 이르는 성장의 세월을 어느 동물의 것보다 가

장 긴 것으로 해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人間界를 내려다 본다면 그 관심은 무능한 갓난아이도 아니고 영장인 어른도 아니라 도리어 무능해서 영장으로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의 그 성장과정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고 어려운 그러나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성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독특하게 마련해 놓은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이처럼 心身이 모두 미숙하여 타인의 보호와 지도가 없이는 자라기 힘들며 나쁜 환경에 방치되어 압박을 받아도 發言能力이 없이 자위의 수단을 갖지 못하며 이 시간에 받은 악영향의 화근은 깊이 남아서 이 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고려를 필요로 한다.

성분, 환경, 출신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존중의 輕重이 달라진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며 보다 약하고 불우한 아동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生活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育兒施設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施設兒童들에게는 단체생활이라는 名目下에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지루한 생활의 연속이다. 아무리 신기하고 흥미있는 장난감을 사다주어도 며칠만



갖고 놀면 곧 싫증을 내는 어린이들의 성격임을 생각한다면 施設兒童에게는 가장 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施設側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체생활 즉, 단체식사, 단체공부, 등의 단체 운동의 생활이 이들에게는 더없이 짜증나는 일인 것이며, 사회인사중 누군가가 방문한다고 하면 청소를 하라, 정돈을 하라,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으며 게다가 질문이라도 받을라치면 내가 무슨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이라도 되는 듯이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뭐 좀 신기한 것이 없을까 하여 기웃거리는 식의 방문에 이제는 숙달이 되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공손한 태도의 인사가 몸에 배어있다. 이 또한 육아시설의 아동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개성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자기만의 개성을 지키며 키워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단체생활이 용납할 수 없다. 가정 생활을 하다가 施設에 入所한 아동에게 가장 먼저와 닿는 것은 모든 물건의 공동사용이다. 특히

속옷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제정, 인력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세세한 것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동들은 어쩔 수 없이 이 施設生活에 적응하며 금방 익숙해지게 되고 자기만의 멋, 자기만의 생활, 자기만의 공간은 어느덧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나는 고아다」라는 생각에 모든 꿈과 소망을 포기해 버리는 고아아닌 또 하나의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 施設 兒童의 生活像

兒童室 構成員의 편성방법을 보면 대별하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 아동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큰 아동까지를 한 兒童室에서 생활하게 하는 혼합수용과 비슷한 연령의 아동끼리 같이 생활하게 하고 있는 또래수용이 그것이다. 각 시설들은 이 두가지 수용형태의 장·단점을 고려·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개인 아동의 의식보다는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편리를 위주로 선택된 느낌이 든다.

혼합수용은 큰 아동들이 어린 동생들을 지도·관리함으로써 보모나 시설종사자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잇점이 있으나 어린 아동들이 형들의 보이지 않는 억압에 의해 항상 눈치만 보게 되어 어린이다움이 없어지고 애 어른이 되가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수용은 관리상에는 난점이 많으나 아동의 생활, 특히 어린 아동의 생활에서 무척 어린이다운 천진난만함이 나타나며, 항상 명랑한 분위기의 시설생활을 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활로 인하여 방을 어지럽히며 버릇이 없어지는 무질서한 생활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이 시설내에서 공부하는 장소를 보면 자기방이나 시설측에서 단체공부를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도서실 및 식당, 강당 등의 부속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부하는 장소의 선택을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방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3이상의 아동들에게는 공부가 시설내에서 하고있는 생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방침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요인으로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뿐 아니라 모든 생활행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성향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는 도서실 및 기타 부속실에서 단체공부를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자기방을 고학년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실태 및 또한 각 방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기인한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통하여 자기방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같은 방에 국민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형태로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간에 많은 불만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서로간에 연령차이가 많지 않으며 공부시간 또한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서 오는 잦은 마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중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수용형태는 첫번째와 같이 연령차가 많으나 構成員間에 공부시간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뒤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또래수용에서처럼 공부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기일 경우에는 공부행위에 별다른 障礙要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내에서의 식사는 주로 식당에서 다같이 모여서 하고 있으며 먹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도 있다. 이러한 단체식사에 대하여 남자아동은 편리하여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여자아동의 경우는 방단위로 자기들이 밥과 반찬을 만들어 언니와 동생이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하며 식사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施設兒童의 人間關係는 같은 학년의 친구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시설종사자들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그들은 부모나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형편이며 대부분 경우, 부모에게 유기당했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은 아니어서 항상 어른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쉽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되는 어른들은 자신들의 개인

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존재이기 보다는 그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달갑지 않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거의 24시간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한다. 직원 선생님들은 그들이 귀찮게 여기는 일을 시키고 야단을 치며 친구들은 그런 피해를 함께 당하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다. 때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항상 서로 협조하고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인간관계의 폭이 어른에게 확대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친구간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모든 시설아동이 이미 꿈과 소망이 없는, 있어도 포기한지 오래인 그런 탓에 生活에 對한 태도가 이상하도록 조숙해 있었으며 人間史에 통달한 어느 道士처럼 자기 생활이, 아니 남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한편으로는 무성의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일견시설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이 저하됐다고 보여지는 경향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날의 사회상황이나 가정상황 및 養護兒童對策의 현상등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定員充足率의 저하현상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양호문제는 더욱 더 우리의 주변에 잠재화해 있고 게다가 그것은 다양화·복잡화의 양상을 가져다 주고 있으므로 시설양호의 필요성은 반대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금후 시설양호가 社會的 要求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소규모, 보다 個別化, 보다 전문화, 보다 지역화, 보다 문화적인 생활수준 보장에 의한 아동의 권리 증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육아시설은 최근에 신축한 몇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老朽化되어 증·개축의 부분적 보수가 필연적이며, 아동들의 집단생활에 부적합한 경우가 허다하여 이들의 안락하고 태어나면서 안고 나온 운명대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현실인 것이다.

■ 育兒시설의 問題點과 그 對策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은 8.15 당시만 하더라도 불과 수십개 시설이었으나 해방과 동시에 점차 증가되어 1949년 말에는 153個의 시설로 되고 특히 6.25사변으로 전쟁고아가 급격히 배출됨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은 1961년 말에는 615個 시설로 크게 늘어났다. 그 후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사회안정도 이루어지고 경제성장도 점차 성취되게 됨에 따라 1977년 말에는 시설이 406개소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1982년 9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 총 수는 291개이며 이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총 2만 4천 1백 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수용 대상아동은 주로 기아, 미아, 고아 및 부랑아 등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많은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수용정원이 미달하고 있는 현재 올바른 성장 과정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금후의 건축에 있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근거 있는 기준을 연구하여 널리 보급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고 즐거운 시설생활을 조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편 아동들의 시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兒童室의 구성원을 어떻게 적절히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는 아동의 단체생활에 대한 지루함을 해결하고 그들의 知的 수준 및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첩경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어 융통성 있는 編成方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적 기준에는 보모 1인당 아동 15명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15명 아동의 신체적·육체적 뒷바라지를 해주기에는 여자의 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며 이에 대한 법적기준의 적절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모의 자질 또한 시급히 향상되어야 할 문제이다. 요사이 약간의 복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보모를 제외하고는 보모 자신의 희생과 아동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人生의 도피처로서 아동의 생활과 성장에는 무관심하게 자기의 삶만을 위주로 하는 식의 전혀 아동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보모가 허

다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시설아동들에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보모가 아동 1인당 1명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아동과 항상 접하며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같이하고 그들의 성장을 조심스럽게 돌봐주는 능력과 사랑을 겸비한 보모의 확보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법적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수용가능 최고 연령이 18세로 되어있어 이 연령을 초과한 소위 시설연장아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뚜렷이 시설을 나가서 할일이 없는 이들은 하는 수 없이 계속 시설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들이 계속 시설에 거주하며 시설에 소요되는 인력부족 특히 노동력 부족에 큰 도움이 되며 어린 아동의 보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점도 있으나 반면에 어린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시설에 대한 불만을 충동하는 등의 방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시설연장아 문제는 육아시설에 살고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언젠가는 닥쳐야 할 상황임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즉 직업교육을 시켜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兒童福祉史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에 왕명으로 전국의 鰥寡孤獨과 노인으로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은 조사하여 그들에게 급식양육 하는 일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鰥은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寡는 늙고 남편이 없는 老婦 孤는 어리고 양친이 없는 어린이 獨은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고구려에서도 제9대 고국천왕에 이와 비슷한 구호사업을 실시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려 제6대 성종13년에 고아로서 양육할 사람이 없는 아동은 10세 까지에 한하여 식량을 지급했고 그 이상의 연령이 되면 자의에 따라 거주케한 기

록이 남아 있다.

조선조에는 제22대 정조가 그 7년에 字恤典則이라는 遺棄 浮浪乞食兒童 保護法令을 공포하여 흉년에 기근이 심한 때에 유기를 당한 어린이나 극빈아 및 정박아를 관가에 留養 또는 민가에 수양토록 허가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이와같은 기아 부랑아동에 대한 보호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 초중기에서도 왕자 인정의 일환으로 국가적 대책이나 민가수양의 관습으로 전래되어 오던 것이지만 제18대 현종2년 이후로는 한성 각 부에 허가를 내려 기아에 대한 官府의 허가제 민가수양이 시행되어 의류와 양식이 관급 되었었다.

그 후 제19대 숙종22년에는 收養臨事目이 제정 실시 되었고 이어 제21대 영조20년에는 同事目이 續大典속에 편찬되어 더욱 확정되었다.

전기한 字恤典則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收養臨時事目이나 字恤典則은 모두 遺棄 또는 부랑하는 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나 奴婢로 삼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하고 있었다.

한편 집단수용보호를 字恤典則에서 찾아보면 그 本뜻가 浮浪乞食하는 기아에 대하여 이들을 관부에서 수용양육하는 책임을 지는 데에 있었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에서 부터 시작하여 지방에 까지 보급을 꾀하였으며 기아에 대해서는 3세까지 풍년 흉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발견하는 대로 서울이면 賑恤廳留接所에 지방이면 지방관자의 수용소에서 수용보호토록 하였다.

근대적 육아사업으로는 조선조 말엽인 고종 25년에 프랑스 신부들의 손에 의하여 지금의 서울 명동 천주교회 유아원이 개설된 것을 비롯하여 甲午更張 이듬해인 高宗 32년에 인천에도 천주교회 부속 고아원이 설립되었다.

光武 10년 3월에 特志家 李芯和가 설립한 京城孤兒院事業은 韓日合併 후 日帝의 賜金을 기금으로 하여 출발한 총독부 직영의 사회사업기관인 濟生院의 사업일부로서 근대적 성격을 띤 사회사업 내지 육아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45년의 해방과 함께 혼란시기를 잠시 거치다가 38도선이남이 미군정의 지배하에 들어간뒤 약 3년간 군정이 계속되는 동안은 사회사업의 신장기간 이기도 하였다.

해방 당시의 전국 아동보호 시설의 수가 육아시설이 33개소 이던 것이 1948년 정부수료 당시에는 96개 시설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그 신장의 속도를 엿볼 수 있다.

1946년 9월 18일에 미군정은 法令 第 112호로 아동노동규를 공포 시행하여 전세계 교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계몽적 이론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7년 5월 16일에는 과도정부법령 제 4호로 未成年者勞動保護法을 공포하여 軍政法令 兒童勞動法規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재천명하였다.

이 未成年者勞動保護法은 미성년자를 유해위험한 직업이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령은 1953년 8월 8일에 勤勞基準法이 실시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이것이 軍政下와 獨立 초기에 있어서 아동복지를 위하여 큰 공헌을 남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1950년 2월 27일에 정부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존의 각 육아시설을 현대화하여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모든 시설로 하여금 이 기준에 준한 설비의 충실 강화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게 하였다.

이 후생시설치기준은 6.25 사변을 통하여 모든 육아 기타 사회사업시설의 지도감독과 육성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아무리 施設의 管理·運營이 잘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建物이 이들에 알맞고 훌륭하게 지어진다고 해도 施設兒童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불우한 환경에 대해 있는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정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그들의 부모로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다해야 하겠다.